



# 2017학년도 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

## I. 지원 자격

### 1. 정원 내

중학교 재학생, 졸업생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, 지도교사,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

### 2. 정원 외 [별첨 1] 참조

중학교 재학생,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영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

## II. 전형 유형 및 선발 인원

구 분		모집 인원	모집 정원
정원 내	글로벌 융합인재전형	전국단위 선발	90명
		지역인재 선발	
정원 외	사회통합전형	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 해당자	모집정원의 10% 이내 9명 이내

※ 지역인재선발 지원 자격

-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(담양고서중학교, 한재중학교, 장성남중학교, 남평중학교 포함)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- 법령에 의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- 타시·도 특성화중학교, 자율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광주광역시에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
※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 중복지원 불가

## III. 입학 원서 접수

구 분	내 용
인터넷 원서접수	기간 : 2016. 4. 6.(수) 09:00 ~ 4. 11.(월) 17:00 접수 사이트 : <a href="http://www.uwayapply.com">http://www.uwayapply.com</a>
자기개발계획서 및 추천서 입력	기간 : 2016. 4. 6.(수) 09:00 ~ 4. 12.(화) 17:00 접수 사이트 : <a href="http://www.uwayapply.com">http://www.uwayapply.com</a>
우편 서류 제출 ※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(방문접수 불가)	기간 : 2016. 4. 12.(화) 소인까지 유효 접수처 : (우)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15 광주과학고등학교 입학원서접수처

## IV.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

제출방법		제출서류	유의사항
우편 제출	공통	입학원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의 해당란에 본인의 서명(또는 날인)과 학교장 직인을 받은 후 제출</li> <li>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(3cm × 4cm) 입력</li> </ul>
		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</li> </ul>
		학교생활기록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력 시 단면으로 인쇄하며 '원본대조필' 및 학교장의 직인과 간인을 받은 후 제출</li> <li>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출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모두 제출</li> <li>지원자가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재학생인 경우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모두 제출</li> <li>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증명서와 비교평가 성적증명서(없는 경우 성적증명서)를 각각 1부 제출</li> <li>외국유학 학생은 해당국가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</li> </ul>
	중1, 중2 재학생	상급학교 진학 허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또는 조기 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본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 허가서 제출</li> </ul>
	사회통합전형 대상자	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 증빙서류 [별첨 2] 참조</li> </ul>
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입력	자기개발계획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편 제출 없음</li> <li>추천서는 지원자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입력</li> <li>지도교사 추천서는 수학교사 또는 과학교사가 작성</li> </ul>	
	담임교사 추천서		
	지도교사 추천서		

※ 유의 사항

- 다음의 자료는 입학전형 서류평가에 반영되지 않음
  - 외부 경시대회 입상 실적
  - 영재학급·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
  - 수학·과학 등 교과에 관련된 인증시험 또는 능력시험 점수
- 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 및 중학교 1, 2학년 중학교 재학생 상급학교 진학 허가서는 해당자만 제출
- 우편 제출 서류는 모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이후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
## V. 전형 방법 및 일정

구분	1단계 전형	2단계 전형	3단계 전형
방법	학생기록물 평가	영재 소양평가	영재성 다면평가
내용	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통하여 영재성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	수학·과학 분야의 기초 소양 및 종합적 문제해결력 등을 통한 수학능력 평가	글로벌 융합 과학인으로서의 자질과 탐구역량 및 잠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접수 기간	2016. 4. 6.(수) ~ 4. 11.(월)	2016. 5. 12.(목) ~ 5. 16.(월)	2016. 6. 17.(금) ~ 6. 21.(화)
전형 일시	2016. 4. 14.(목) ~ 5. 10.(화)	2016. 5. 22.(일)	2016. 7. 2.(토) ~ 7. 3.(일) 1박2일
전형 대상	지원자 전체	2단계 등록자	3단계 등록자
선발 인원	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(800명 내외)	180명 내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원 내 : 90명 (45명을 지역인재 선발 대상으로 선발)</li> <li>• 정원 외: 9명 이내</li> </ul>
단계별 대상자 및 합격자 공고	2단계 대상자 2016. 5. 12.(목)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	3단계 대상자 2016. 6. 17.(금)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	최종 합격자 2016. 7. 22.(금)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

※ 모든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※ 각 단계별 평가 시 이전 단계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사정한다.

※ 2단계 전형에서 우선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, 우선합격자는 3단계 전형의 일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불참 시에는 불합격 처리된다.

※ 사회통합 전형은 정원 내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며, 단계별 대상자 및 합격자 선정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 Ⅵ. 전형료

1단계 전형료	2단계 전형료	3단계 전형료
20,000원	30,000원	30,000원

1. 원서 접수 시 전형료는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결제
2. 2단계 및 3단계 전형 대상자는 추가 전형료를 납부해야 하며, 납부 방법은 추후 공지함
3.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 및 단계별 전형료는 별도 부담
4. 사회통합전형 지원자의 전형료는 면제(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는 본인부담)
5. 원서 접수 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

## Ⅶ. 유의사항

1. 각 단계별 전형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
2. 입학전형 평가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
3.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4.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 포기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후보자 중에서 선발함
5. 최종 합격한 이후라도 출신학교 교육과정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본교 교육과정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6. 기타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

[별첨 1]

**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**

중학교 재학생,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영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

-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 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권자
- 2)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거주하는 자  
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, 재학 기간 중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
- 3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- 4) 행정구역상 읍·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
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, 재학 기간 중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
- 5) 그 밖의 사회·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가) 사회적 이유

- (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- (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- (3)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2조, 제13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- (4)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- (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- (6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의한 보호대상자
- (7) 「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
- (8) 소년·소녀 가장, 조손가정의 자녀

나) 경제적 이유

- (1)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
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(아동교육비) 수급권자
- (2) 차상위 저소득층 : 법정 차상위 계층  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사무소로부터 지정되어 각종 차상위 관련업의 지원(차상위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자활급여, 차상위 장애수당 등)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 소득 50%이하)

## 사회통합전형 증빙 서류

구 분	제출 서류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등록등본 1부, 수급자 증명서 1부</li> </ul>
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거주하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등록등본 : 과거의 주소변동(이력)사항 포함 1부</li> </ul>
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(선정통지서 등) 1부</li> </ul>
행정구역상 읍·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등록등본 : 과거의 주소변동(이력)사항 포함 1부</li> </ul>
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등록등본 1부,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</li> </ul>
법정 차상위 계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등록등본 1부,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</li> </ul>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• 관할 보건지청장 발급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</li> </ul>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
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
「고엽제휴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호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• 통일부장관 발급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</li> </ul>
「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•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의 경우) 1부</li> <li>• 부 또는 모의 귀화증명서(귀화허가를 받은 경우) 1부</li> </ul>
소년·소녀 가장, 조손가정의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) 1부</li> <li>• 사실관계확인서 1부 (주민센터 복지사 확인)</li> </ul>

※ 제출서류 유의사항

- 주민등록등본 : 등본 상에 부, 모가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(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세대분리 여부 등 확인)
- 차상위계층확인서 :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 (차상위장애수당, 차상위자활급여 등)
  -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의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함